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계약 조건

2019.11.

1.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1년(계약일 기준)

나. 보험적용: 계약일로부터 휴무·공휴일 관계없이 적용

다. 가입대상: 동국대학교(서울 및 고양캠퍼스) 연구활동 종사자

1) 국적·소속·전공·신분·연령 등과 관계없이 동국대학교(서울 및 고양캠퍼스)가 연구활동 종사자로 인정하는 자

* 학부생·대학원생의 경우, 가입학과에 한하여, 추가 학적등록생의 경우 자동담보되며, 휴학이나 졸업 등으로 학적에서 제외된 경우 담보에서 자동 제외됨

* 연구원·연구보조원의 경우, 신규채용 된 인원의 경우 사고발생 전 제출된 명단에 한하여 자동담보하며, 기존 인원과 변경되어 채용된 경우 총장·기관장 공문으로 증명할 경우 보상이 가능

2) 가입대상인원: 학과별, 과정별 가입인원 (세부현황: 별첨)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합계
인원	5,215	473	0	134	5,822

※ 가입 대상인원은 계약일 기준으로 증감변동 될 수 있음

라. 보험종류: 사망·상해·후유장해 및 의료비 보장 보험

마. 보험적용

1) 연구활동 종사자 전공 및 신분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2)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기술연구개발과 교과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르는 모든 보상은 본인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3)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중의 손해

- 4) 연구 실험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중의 손해
- 5)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
- 6) 본교 이외의 연구실(타 대학·연구기관·연구현장 및 기술연구개발과 관련한 시설)활동 중 발생 한 손해

바. 보험(내역)가입: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인수

사. 보험금 신청 및 지급

- 1) 보험금 신청·접수: 피보험자 → 연구실 안전 주무부서 → 보험사
- 2) 보험금 지급: 보험사 → 피보험자 예금통장 입금 (평일 20일 이내)

2. 보험 내용

가. 보장내역 및 한도

구 분	지 급 근 거	보장 한도(1인당)
요양급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2조 지급	5천만원
장해급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3조 지급	2억원
입원급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4조 지급	1일 5만원 (3일 초과 30일 한도)
유족급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5조 지급	2억원
장 의 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6조 지급	1천만원

나. 보장내역별 제안내용

1) 요양급여

-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의사의 소견이 없는 시술, 치료, 검사 및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시설 및 서비스 이용료 등)은 보상하지 않음)
- 연구실 사고로 인한 질병을 보상한다.
- 연구실사고로 인한 부상·질병 등 신체상의 손해에 따른 의료비는 치료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 비급여항목도 보상하며,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급한다.
-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의지(義肢)·의치(義齒)·안경·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복구비를 지원한다.

2) 장해급여

- 담보하는 상해로 신체장해가 발생한 때에 후유장해등급별로 보상

3) 입원급여

- 입원 1일당 5만원 3일 초과 30일 이내 한도에서 정액 보상한다.
- 입원급여는 요양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4) 유족급여

- 사망 시(「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 포함) 2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5) 장의비

- 사망 시 장제를 실제로 지낸 자(법인 포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
- 장의비는 유족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6) 추가 보장사항

- 피보험자 사망 및 상해 등 신체손해로 인한 수업료 손실액을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 피보험자 사망 및 상해 등 신체손해로 인한 기숙사비 손실액을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7)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고의. 다만,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연구목적상 의도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한다.
- 수익자의 고의.(그 수익자가 급여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
-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공제자가 입은 상해가 직접원인이 되어 걸린 질병이 아닌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

-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담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